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4-7호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일부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4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수에 비하여 이와 관련한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충전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재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 및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안 제10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19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참조: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개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 jajaja4400@korea.kr
- 2) 주 소: (우37183)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의회
- 3) 팩 스: 054-535-9854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37-78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angjuCouncil.go.kr> → 의회소식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